부천산업진흥재단 규정 개정(안)

□ 개정 사유

○ 주무관청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관 개정

○ 2017년 종합감사 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한 규정 개정

○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임직원 행동강령 등 개정

□ 개정 규정

규정명	제·개정사유	주요골자
정관	· 회계결산 보고기한 조례와 상이	· 결산보고 기한 변경(조례 준용) -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→ 출납폐쇄 후 80일 · 사업실적보고 기한 현행 유지(주무관청 의견 반영)
임직원행동강령 규정	· 부패방지 권익위 수범사례 도입 · 외부강의 신고 제외기관 정비 (2017 종합감사 지적사항)	· 부패방지 권익위 수범사례 도입 규정 반영 - 직무관련 퇴직자와 불필요한 사적 접촉 제한 - 직무관련자에게 현찬 요구행위 금지 - 공용재산 사적사용 시 손해배상 기준 마련 ·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을 신고대상에 포함
인사규정 시행내규	· 인사기록카드 용어 현행화 (2017 종합감사 지적사항) · 부패방지 시책 반영	· 인사기록카드 및 부속서류 정비 - 인사기록카드 기재사항 중 '본적'란 삭제 - 호적초본→가족관계 기록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· 부패신고 방해 및 신고자보고 위반자 징계기준 신설
공무국외여행 규정	· 심사위원회 설치 명문화 (2017 종합감사 지적사항)	·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·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
공용시설및장비 운용규정	· 공용장비 사용 관리업무 개선 · 공용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정비 (2017 종합감사 지적사항)	· 장비사용 관련 기업 작성서류 간소화 · 장비점검표 작성주기 현실화(매일→매월) · 공용시설 명칭(회의실, 교육실) 및 징수기준 정비

□ 시행일

○ 정　　관 :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

○ 기타규정 : 이사장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